



보도시점

2023. 12. 27.(수) 11:00
12. 28.(목) 조간

배포 2023. 12. 27.(수) 09:00

농식품부, 사료의 안전·품질관리 강화 시행

- 위해사료의 공표내용 및 방법 규정,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개정된 「사료관리법 시행령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「사료관리법*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위해사료의 회수·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,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,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조업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포함 등

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, 소비자는 「사료관리법」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, 위반 내용 및 회수·처리 방법,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또는 시·도)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②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(50만원)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하면서, 사료 제조업체도 양질의 사료 생산·공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「사료관리법 시행령」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(www.law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	책임자	과 장	서준한 (044-201-2351)
		담당자	사무관	서주형 (044-201-2359)



□ (공포일) '23.12.12 / (시행일) '23.12.28

주요 개정내용	조항														
○ (공표 방법) 회수·폐기 명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「신문법」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 신문 등에 게재 ○ (공표 내용) 「사료관리법」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표제, 위반내용 및 회수·처리 방법, 영업자의 정보 등	제4조의2 (위해사료 등의 공표) 신설														
○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	제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제1항제3호의2 신설														
○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 상향 - 과징금의 하한액 및 1일 과징금 금액을 각각 3배로 상향	별표 1 (과징금의 부과기준)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과징금 금액</th><th>하한액</th><th>배합사료</th><th>단미사료</th><th>보조사료</th></tr><tr><td>영업의 전부 정지</td><td rowspan="2">50만원→150</td><td>500원/톤 → 1,500</td><td>5,000원/톤 → 15,000</td><td>10,000원/톤 → 30,000</td></tr><tr><td>영업의 일부 정지</td><td>250원/톤 → 750</td><td>2,500원/톤 → 7,500</td><td>5,000원/톤 → 15,000</td></tr></table>	과징금 금액	하한액	배합사료	단미사료	보조사료	영업의 전부 정지	50만원→150	500원/톤 → 1,500	5,000원/톤 → 15,000	10,000원/톤 → 30,000	영업의 일부 정지	250원/톤 → 750	2,500원/톤 → 7,500	5,000원/톤 → 15,000	
과징금 금액	하한액	배합사료	단미사료	보조사료											
영업의 전부 정지	50만원→150	500원/톤 → 1,500	5,000원/톤 → 15,000	10,000원/톤 → 30,000											
영업의 일부 정지		250원/톤 → 750	2,500원/톤 → 7,500	5,000원/톤 → 15,000											
○ 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신설 - 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함	별표 2 (과태료의 부과기준)														